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고 등 교 육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은혜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다양한 형태의 융합형 교육과정 및 학사제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입학 단계의 모집단위와 연계되지 않은 융합학과의 신설·운영에는 법·제도상 한계가 있어, 모집단위와 관계없이 융합형 교육과정 이수 가능한 학과 단위 등 학사제도 운영 근거 마련을 통해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울러, 학과 개편·정원 조정에 대한 대학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하여 첨단학과 운영이 보다 용이하도록 추가 제도 개선

3. 주요내용

가. 모집단위와 관계없는 연계·융합학과의 설치 (안 제19조의2 신설)

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을 이수하기 위하여 모집단위가 아닌 학과 또는 학부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함

나. 첨단학과의 경우, 입학정원의 예외 규정 신설(안 제28조 제6항 신설)

첨단학과의 경우 입학정원 이외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단위별 정원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함

다. 모집단위가 아닌 학과 또는 학부로 전과 허용(안 제29조 개정)

안 제19조의2에 따라 모집단위가 아닌 학과 또는 학부의 설치가 가능
해짐에 따라, 해당 학과로의 전과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임

라. 대학원 간 입학정원 조정 시, 교육여건 제한 기준 완화(안 제30조 제8항 신설)

대학이 첨단분야 대학원 신·증설을 위하여 대학원 간 입학정원을 조
정(자체조정) 하는 경우, 교육여건 제한 기준 완화

마. 준용규정 대상 추가 반영(안 제61조 개정)

전문대학의 준용규정 추가 반영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20.3.23. ~ '20.5.4.)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비대상

대통령령 제 호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연계·융합학과의 설치) 대학의 장은 학생이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공을 이수 할 수 있도록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단위가 아닌 학과 또는 학부를 둘 수 있다.

제2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모집단위 별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9조제3항 본문 중 “모집단위로”를 “모집단위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모집단위가 아닌 학과 또는 학부로”로 한다.

제30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대학원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1조 중 “제19조”를 “제19조, 제19조의2”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8조(학생의 정원) ① ~ ⑤ (생 략) <u><신 설></u> 제29조(입학·편입학 등) ①·② (생 략) ③대학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 에 따라 2학년 이상인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 만, 제2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 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 과할 수 없으며, 제28조제3항제	<u>제19조의2(연계·융합학과의 설치)</u> <u>대학의 장은 학생이 제19조제1</u> <u>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공을</u> <u>이수 할 수 있도록 학칙이 정하</u> <u>는 바에 따라 모집단위가 아닌</u> <u>학과 또는 학부를 둘 수 있다.</u> 제28조(학생의 정원) ① ~ ⑤ (현 행과 같음) <u>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u> <u>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의</u> <u>모집단위별 정원은 교육부장관</u> <u>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u> <u>수 있다.</u> 제29조(입학·편입학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모집단위</u> <u>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모집단</u> <u>위가 아닌 학과 또는 학부로 --</u> <u>-. -----</u> ----- -----

2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① ~ ⑦ (생 략)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⑧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대학원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u>
제61조(준용규정) 전문대학의 경우 학생의 전공이수, 입학전형 자료,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19조, <u>제35조</u> , 제48조 및 제52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61조(준용규정) ----- ----- ----- ----- <u>제19조의2, 제35조</u>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6921